

2019학년도

한세대학교_학부

계 약 학 과 모 집 안 내

[재교육형/채용조건형_편입]



1. 계약학과 설치 법령 및 목적

가.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나. 개념 :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위 과정

다. 설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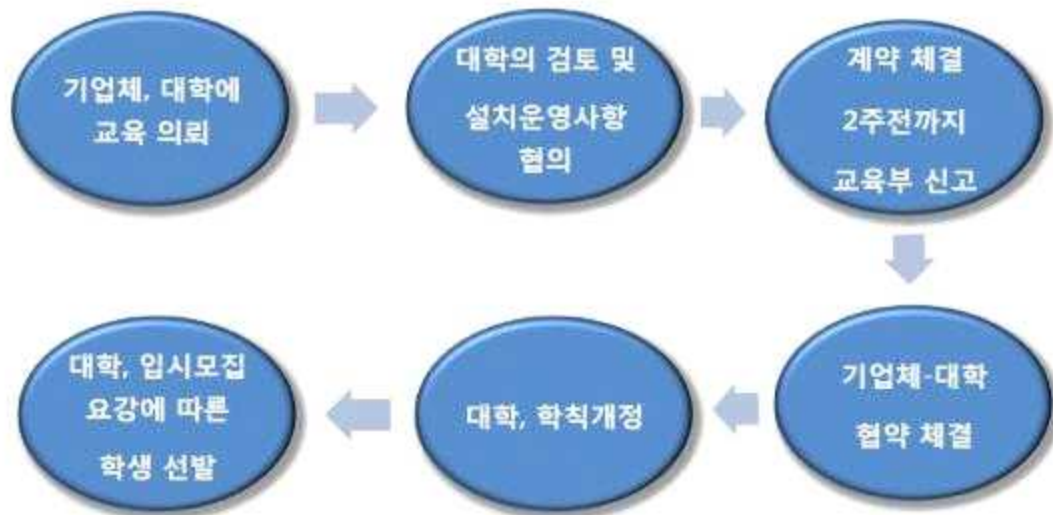
- 1)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 교육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유형
- 2)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경비의 50% 이상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협의에 의해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형

라. 산업체 범주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동일한 광역행정구역(경기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직선거리 50km 이내
(복수의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사 기준으로 적용 함)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마. 계약학과 설치 절차



2. 산업체의 범위 및 입학 자격 (제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산업체 학생 입학 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u>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u>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 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직선거리가 50Km이내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장(기관장)이 입학할 수 있고 학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자 ● 협약업체에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이 <u>모두 가입</u>되어 있는 자 ●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학생 <u>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u> ●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u>10개월</u> 재직한 자 (2019. 3. 4.개강 기준)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도 입학 가능

2-1. 산업체의 범위 및 입학 자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채용조건형 학생 입학 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전국 단위 모집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장(기관장)이 입학할 수 있는 자 ● 졸업 후 의무 채용 및 근무를 약정한 채용약정서를 제출한 산업체 및 학생 ●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학생 <u>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u>

3. 설치 학과

계열	학과명	학위 과정	계약 형태	정원	학위 종별	이수 학기
공학계열	IT융합지능로봇	학사 (편입)	재교육형	20	공학사	4학기
공학계열	IT융합	학사 (신입)	재교육형	20	공학사	8학기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행정	학사 (편입)	재교육형	20	문학사	4학기
인문사회계열	보건융합사회적기업	학사 (편입)	재교육형	10	경영학사	4학기
인문사회계열	보건복지사회적기업	학사 (편입)	채용조건형	10	경영학사	4학기

4. 산업체의 범위 및 입학 자격

산업체 추천 대상자 입학자격	
♠ 신입학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편입학전형 ● 4년제 대학에서 2년(4학기)이상 수료(예정)인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전형 및 배점

입학유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 계
재교육형	50%	50%	100%
채용조건형	50%	50%	100%

● 합격자 선발 방법

- ◆ **면접 및 서류전형**에 의해 선발하며 본교 합격자 사정원칙에 따름
-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 본교와 산업체간의 협약에 의하여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전형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산업체에서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계약학과 설치요청서	본교 소정 양식
② 계약학과 위탁교육 추천 및 의뢰서	본교 소정 양식
③ 사업자 등록증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본교 소정 양식
⑤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입인원 표시 필수) (http://minwon.nhis.or.kr)
⑥ 채용약정서	채용조건형 만 제출함

■ 입학자가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	비고
개 인 공 통	① 계약학과 입학원서(본교 양식) 1부	•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입학원서 직접 제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개인) ※ 채용조건형 제외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www.4insure.or.kr)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 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③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용조건형 제외	•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로 대체 가능
	④ 재직증명서 ※ 채용조건형 제외	• 지원예정자 재직증명서 원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교 소정 양식
학 사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단,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학 사 편 입	① 아래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취득자 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는 학력 인정증명서 제출
비고	주) 관련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산학협력단 계약학과에서 Download 가능 주) 개인공통 서류 중 ①②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갈음 함 주) 채용조건형은 개인공통서류 중 ②③④ 서류 제출 안함	

6. 전형 관련

■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유 의 사 항
산업체 서류	2018. 12. 10.(월) ~ 2019. 1. 17.(목)	• 산학협력단 제출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한 계약 체결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9. 12. 10.(월) ~ 2019. 1. 17. (목)	• 대학계약학과 입학지원시스템	• http://ims.hansei.ac.kr/platform/portal.jsp
전형일자	2019. 1. 26.(토)	• 한세대학교 디자인관 3층 고사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료 미납자 면접 참여 불가
합격자발표	2019. 1. 29.(화)	• 대학계약학과 입학지원시스템	• 개별공지하지 않음
등록기간	2019.01. 30.(수) ~ 2019.01. 31.(목) 17:00까지	• 기업부담금 : 가상계좌 • 본인부담금 : 가상계좌	• 등록금 고지서 개별수령 후 산업체 · 본인 부담금 별도로 가상계좌로 납부
기업납부금 납부확인 서류제출기간	FAX로 제출 2019. 01. 31.(목) 17:00까지	• 산학협력단 FAX. 031-477-7506	• 기업체 납부금 이체 확인증을 팩스 전송함 • 미제출시 입학취소

■ 전형료 : 50,000원

- 전형료 미납자는 전형절차를 취소하고, 입학할 불가 함.
- 전형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8537-01-005467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형료 환불 안내

- 접수가 완료된 이후(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이후 천재지변, 질병(입원) 또는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원서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관련증빙서류 제출 시 전형료 전액 감면 함

7. 합격자발표 및 등록 안내

■ 합격자발표

1. 합격자 명단은 입학지원시스템 접속 후 확인
2.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에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산업체 납부금 고지서는 반드시 산업체에 고지하여야 하며, 산업체부담금 및 개인부담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3.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취소 됨.

■ 등록안내

1. 등록금은 개인부담금과 산업체부담금을 지정(가상)계좌에 납부.
2. 산업체부담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야하며, 이체확인증을 기한 내에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이체확인증** 미제출시 입학취소하고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환불함
 - 팩스 / 우편 / 방문제출 가능
4. 지원 서류에 제출한 법인계좌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체 된 증빙 서류만 인정함
 - 이체증빙 예시
 - 출금된 내역이 포함된 통장면의 사본(상단에 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출력한 이체확인증(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무통장입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업체부담금 이체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음
 - 토요일, 일요일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8. 산업체 추천 지원자 유의사항 (재교육형)

■ 재학 중 학적유지 관련 유의사항

- 계약학과 입학 후 산업체에서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제2항)
-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등록금 등)는 학생이 전액 부담합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전체 졸업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개인 부담으로 학적 유지
 - 전체 졸업학점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할 경우 학적 유지
- 학적이 유지되는 퇴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확인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조사관련 유의사항

- 입학 시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학자격을 확인.
- 입학 후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월 시행하는 재직조사에 반드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됩니다.
(매학기 개시전월: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제출, 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첨부)

■ 기타 유의사항

- 이미 접수된 원서 및 서류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원서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접수 하여야함

9.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함.
2.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기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처리함.

10. 관련문의

전공	연락처	담당자
사회복지행정	031-450-5008	백진아 교수
IT융합/IT융합지능로봇공학	031-450-5146	이왕헌 교수
보건융합/보건복지	031-450-9865	윤준영 교수
산학협력팀	031-477-7503	한근수 담당

□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세혜택 내용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비용 부담경비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¹⁾을 부여하고 있음

구분		국세	지방세	비고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공제항목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또는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감면비율	중소기업	100분의 25	100분의 25 X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8	100분의 8 X (100분의 10)	
	대기업	최대 100분의 3	최대 100분의 3 X (100분의 10)	

※ 맞춤형 교육비용 중 수도권 내 소재 대학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지방세의 경우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봄

※ 산업체별 실제 감면비율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신고절차

[국세]

- 각 사업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첨부하여 신고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기 경과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45의 2 ①)

[지방세]

- 각 사업년도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신청) 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첨부하여 신고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기 경과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51 ①)

1)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1119, 2009.10.1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또한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질 경우 연구소 소속의 연구인력 및 당해 기술이 적용되어지는 생산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 18(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산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교육비용)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사업주 훈련제도 안내

1. 사업주지원훈련이란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3.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계약학과 설치 요청서

1. 계약학과 의 명 칭

2. 과정명(학위명)

3.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조, 제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교 대학원에 계약학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대표 (직인)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 1부. 끝.

한세대학교 총장 귀하

계약학과 사전 조사 자료

항 목	내 용
계약학과 개설 희망분야 및 교과목	※ 개설을 희망하는 분야(특별교육과정)를 기재
계약학과 개설 희망 시기	※ 0000년, 1학기, 2학기 기재
계약학과 설치 장소	※ 대학교내 강의실, 사업장 내 개설 선택
수업(강의) 방법	※ 주간, 야간, 주야간 혼합 형태 선택
수업(강의) 요일	※ 주 중 ()요일, 주말과정 등
1인당 지원 가능한 교육비 한도액	※ 사업주 교육비 예산

계약학과 위탁교육 추천 및 의뢰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직 사항	소속		직위 · 직급	

상기 직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에 의거 귀 대학이 실시하는 『계약학과에 의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위탁교육』에 입학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직원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및 교육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과정명 : 계약학과에 의한 학사 과정 위탁교육
- 위탁 교육 분야 : (학과 및 전공 명칭 기재)
- 개설 학기 : _____년____학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소속기관 대표 : _____ (인)

한세대학교 총장 귀하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한세대학교(이하 “학교” 이라 한다)와 (산업체명) (이하 “산업체” 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전공)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 ① 재교육형 : 입학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서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 ② 채용조건형: 입학대상은 “산업체”에서 요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채용 및 의무근무를 약정한 경우에 자로 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나 의뢰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은 전체수업의 50% 이상으로 하며, 나머지 50%는 현장실습, 원격수업 등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한세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학사관리) ①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 ② 계약학과는 일반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군 입대를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 ③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 한다.

- 제 8 조(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반드시 산업체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입학금 포함)의 50%이상을 부담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
 2. 학생 분담비율 : %
- 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산업체명의로의 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 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되며, 학생은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된다.
-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졸업이수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 ⑥ 채용조건형의 경우는 채용약정서의 내용에 의거한다.

-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산업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단, 재학 중인 동일한 계약학과와 계약된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학생의 등록금 중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한다는 이직한 업체의 각서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100%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채용조건형의 경우 산업체의 사유로 인해 학생의 교육이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업계의 산업체에서 채용을 약정하고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한다는 각서가 있는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내 학위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한세대학교

업 체 명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총장 김 성 혜 (인)

대표자

(직인)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제 2조 (참고자료)

학과(전공)명칭	학습 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 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IT융합지능로봇	주말	학사	공학사	20	2019.3.1.~2021.2.28	한세대

학과(전공)명칭	학습 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 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IT융합	주말	학사	공학사	20	2019.3.1.~2023.2.28	한세대

학과(전공)명칭	학습 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 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사회복지행정	야간/주말	학사	문학사	20	2019.3.1.~2021.2.28	한세대

학과(전공)명칭	학습 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 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보건융합사회적기업	주말	학사	경영학사	20	2019.3.1.~2021.2.28	한세대

학과(전공)명칭	학습 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 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보건복지사회적기업	주말	학사	경영학사	10	2019.3.1.~2021.2.28	한세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세대학교는 계약학과 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한세대학교 계약학과 운용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학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2호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지원사항(전형구분, 모집단위/지원학과), 지원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 학교 정보 (최종학력, 재학/출신 학교명, 졸업(예정)연도, 대표번호)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계약학과 운용에 관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단, 학적기록은 영구보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계약학과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계약학과 계약 체결 및 입학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계약학과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계약학과 계약 및 입학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